



원본: 영어

No.: ICC-02/05-01/12

날짜: 2012년 3월 1일

제 1 예심원

담당: 판사 산지 음마세노노 모나갱, 부장판사
판사 실비아 스타이너
판사 쿠노 타르푸서

수단 다르푸르 사태
검찰 대(對)
압델 라힘 무하마드 후세인건(件)

공개 문건

압델 라힘 무하마드 후세인에 대한 체포 영장

재판소 규정 31 조에 의거, 판결은 다음 당사자들에게 통보됨:

검사실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검찰총장
파투우 벤소우다, 검찰차장

변호인단

피해자 측 법정 대리인단

신청인 측 법정 대리인단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피해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신청인
조정/보상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 사무실

피고 측 국선 변호인 사무실

국가 측 대리인

법정 조연자

사무처

사무총장

실바나 알비아

변호 지원부

디디에르 프레이라

피해자 및 증인단

구치부

피해자 조정 및 보상부

기타

국제 형사 재판소 (이후 “재판소) **제 1 예심원** (이후 “예심원”)은;

2011 년 12 월 2 일 검찰총장이 수단 다르푸르 사태(이후 “다르푸르 사태”) 기록에 따라 반인륜범죄 및 전쟁범죄 혐의로 압델 라힘 무하마드 후세인(이후 “Mr 후세인”)에 대해 체포 영장 발부를 신청하면서 제기한 “Prosecutor’s Application under Article 58” (이후 “검찰총장 측 신청”)¹을 **심리하였고**;

검찰총장 측이 제출한 보충 자료를 **심리하였고**;²

협약 25 조 3 항 (a)에 의거, 반인륜범죄 및 전쟁범죄에 대한 Mr 후세인의 간접 종범으로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상당하며 이에 따라 협약 58 조 1 항 (b)에 의거,

¹ ICC-02/05-237-US-Exp 및 부속문건; ICC-02/05-237-Red..

² ICC-02/05-237-US-Exp, 부속문건 A & 1-3.46; ICC-02/05-240, 부속문건 A & B1-B28.

해당인의 체포가 필요하다고 예심원이 인정한 바에 따라, “Decision on the Prosecutor's Application under article 58 relating to Abdel Raheem Muhammad Hussein”³를 **고지하고**;

로마협약 (이후 “협약”) 7, 8, 13(b), 19(1), 25(3)(a), 27, 58(1)과 (2)(d)를 **고지하고**;

협약 19 조에 의해 내려질 수 있는 모든 후속 판결과는 별개로, 검찰총장 측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장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Mr 후세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재판소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현 단계에서 Mr 후세인에 대한 재판 권한을 결정하는 협약 19 조 1 항에 의거, 검찰총장 측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장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재판소의 결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분명한 이유와 자기 증거요소가 없음을 **고려하고**;

검찰총장 측 신청에 따르면, 2002 년 8 월경 이래 수단공화국 다르푸르에서 수단공화국 정부 측의 수단군 및 잔자위드 민병대와 수단 해방운동/군(이하 “SLM/A”) 및 정의와 평등운동(이하 “JEM”)을 포함한 수 개의 반군 조직 간에 장기적인 군사 충돌이, 협약 8 조

³ ICC-02/05-01/12-1-Red.

2 항 (f)의 해석에 따라, 항시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근거가 상당함을

고려하고;

수단군과 잔자위드 민병대가 합동으로 실시한 대 게릴라전에서 코툼과 빈디시, 무크자르, 아라왈라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공격이 적어도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여러차례 자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

이러한 공격이 감행되는 동안 수단군과 잔자위르 민병대에 의해 주로 푸르 부족민들을 대상으로 코툼과 빈디시, 무크자르, 아라왈라 및 인근지역에서 협약 8(2)(c)(i)에 반한 살인, 협약 8(2)(e)(vi)에 반한 강간, 협약 8(2)(c)(ii)에 반한 인간 존엄성 유린, 협약 8(2)(e)(i)에 반한 의도적 민간인 공격, 협약 8(2)(e)(xii)에 반한 사유재산 파괴, 협약 8(2)(e)(v)에 반한 약탈 등의 전쟁범죄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

수단군과/또는 잔자위드 민병대가 반군세력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푸르와 마사리트, 자그하와 부족의 민간인을 주 대상으로 국가 또는 국가조직의 정책에 따라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공격을 자행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

이러한 공격이 감행되는 동안 수단군과 잔자위르 민병대에 의해 주로 푸르 부족민들을 대상으로 코툼과 빈디시, 무크자르, 아라왈라 및 인근지역에서 협약 7(1)(h)에 반한 박해,

협약 7(1)(a)에 반한 살인, 협약 7(1)(d)에 반한 강제 이주, 협약 7(1)(e)에 반한 투옥 및 심각한 자유침해, 협약 7(1)(f)에 반한 고문, 협약 7(1)(g)에 반한 강간, 협약 7(1)(k)에 반한 기타 비인도적 행위 등의 반인륜범죄가 자행되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

수단공화국 정부가 정부에 대항하는 SLM/A와 JEM 및 기타 무장단체들을 대상으로 대 게릴라전을 수행함에 있어 반군에 가담했다고 간주된 일부 민간인-주로 푸르와 마사리트, 자그하와 부족민-에 대한 불법공격 자행을 핵심내용으로 한 고도의 음모를 획책했으며 그 음모에 따라 혐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실제로 행해졌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

다르푸르 내 대통령 특별 대리이자 내무부 장관 및 수단공화국 정부의 영향력있는 인사로서, Mr 후세인이 상기 음모의 획책과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무엇보다 전국과 주 및 지역 보안기구들을 전반적으로 조종하고 다르푸루 내 잔자위드 민병대 및 경찰 병력의 모집 및 무장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자원 조달 등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

Mr 후세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범죄행위가 자행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행위를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

검찰총장 측 청구에 적시된 바, Mr 후세인이 협약 25(3)(a)에 의거, 아래와 같은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

(i) 협약 7(l)(h)에 의거, 반인륜범죄에 해당하는 박해,

(a)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번디스 행정구 내 코돔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2003년 8월 15일경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살인행위, 민간인 공격, 사유재산 파괴, 강제 이주 등의 박해 행위, (b)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번디스 행정구 내 빈디시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2003년 8월 15일경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살인행위, 강간, 민간인 공격, 비인도적 행위, 약탈, 사유재산 파괴, 강제 이주 등의 박해 행위, (c) 서 다르푸르 무크자르 지역 내 무크자르 마을과 그 인근 지역에서 2003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살인행위, 민간인 공격, 투옥 또는 심각한 자유침해, 고문, 약탈, 사유재산 파괴 등의 박해 행위, (d)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내 아라왈라 마을과 그 인근 지역에서 2003년 12월경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살인행위, 강간, 민간인 공격, 인간 존엄성 유린, 비인도적 행위, 약탈, 사유재산 파괴, 강제이주 등의 박해행위;

(ii) 협약 7(l)(a)에 의거, 반인륜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a)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번디스 행정구 내 코돔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2003년 8월 15일경 및 2003년 8월 31경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민간인 살해, (b)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번디스 행정구 내 빈디시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2003년 8월 15일경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민간인 살해, (c) 서 다르푸르 무크자르 지역 내 무크자르 마을과 그 인근 지역에서 2003년 9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그리고 2003년 12월경 및 2004년 3월경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살인(d)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내 아라알라 마을과 그 인근 지역에서 2003년 12월경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민간인 살해;

(iii) 협약 8(2)(c)(i)에 의거,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a)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번디스 행정구 내 코돔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2003년 8월 15일경 및 2003년 8월 31일경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민간인 살해, (b)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번디스 행정구 내 빈디시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2003년 8월 15일경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민간인 살해, (c) 서 다르푸르 무크자르 지역 내 무크자르 마을과 그 인근 지역에서 2003년 9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그리고 2003년 12월경 및 2004년 3월경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살인(d)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내 아라알라 마을과 그 인근 지역에서 2003년 12월경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해당 민간인들이 여하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행된 민간인 살해;

(iv) 협약 8(2)(e)(i)에 의거,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민간인 공격,

(a)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번디스 행정구 내 코돔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2003년 8월 15일경부터 2003년 8월 31일경까지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자행된 민간인 공격, (b)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번디스 행정구 내 빈디시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2003년 8월 15일경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자행된 민간인 공격, (c) 서 다르푸르 무크자르 지역 내 무크자르 마을과 그 인근 지역에서 2003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자행된 민간인 공격, (d)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내 아라알라 마을과 그 인근 지역에서 2003년 12월경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자행된 민간인 공격;

(v) 협약 8(2)(e)(xii)에 의거,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사유재산 파괴,

(a) 2003년 8월 15일경부터 2003년 8월 31일경까지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번디스 행정구 내 코돔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코돔 쥬레와 코돔 티네, 코돔 워스타,

코둠 델리와에서의 가옥방화를 포함, 자행되었던 사유재산 파괴, (b) 2003년 8월 15일경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빈디스 행정구 내 빈디시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지역 내 식품 저장고와 이슬람 예배소 및 주거시설 방화를 포함, 자행되었던 사유재산 파괴, (c) 2003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서 다르푸르 무크자르 지역 내 무크자르 마을과 그 인근 지역에서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주거시설 방화와 농장 및 농작물 파괴를 포함, 자행되었던 사유재산 파괴, (d) 2003년 12월경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내 아라알라 마을과 그 인근 지역에서 주로 푸르 부족민을 대상으로 아라알라 마을 대부분 지역에 대한 파괴를 포함, 자행되었던 사유재산 파괴;

(vi) 협약 7(l)(d)에 의거, 반인륜범죄에 해당하는 강제 이주,

(a) 2003년 8월 15일경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코둠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대부분 푸르 부족민이었던 20,000여 명을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빈디시 마을 및 기타 지역으로 강제이주시켜 해당 마을들을 황폐화시킴, (b) 2003년 8월 15일경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빈디시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대부분 푸르 부족민이었던 34,000여 명을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무크자르 마을 및 기타 지역으로 강제이주시켜 해당 마을을 황폐화시킴, (c) 2003년 12월경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아라알라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대부분 푸르 부족민이었던 7,000여 명을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데레이그 마을과 가르실라 마을 및 기타 지역으로 강제이주시켜 해당 마을을 황폐화시킴;

(vii) 협약 7(l)(g)에 의거 반인륜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a) 2003년 8월 15일경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빈디스 행정구 내 빈디시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주로 푸르 부족 여인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강간, (b) 2003년 12월경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아라알라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주로 푸르 부족 여인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강간;

(viii) 협약 8(2)(e)(vi)에 의거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a) 2003년 8월 15일경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번디스 행정구 내 빈디시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주로 푸르 부족 여인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강간, (b) 2003년 12월경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아라왈라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주로 푸르 부족 여인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강간;

(ix) 협약 7(l)(k)에 의거, 반인륜범죄에 해당하는 비인도적 행위,

(a) 2003년 8월 15일경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번디스 행정구 내 빈디시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비인도적인 행위를 통해 주로 푸르 부족 민간인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고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상해를 가함, (b) 2003년 12월경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아라왈라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비인도적인 행위를 통해 주로 푸르 부족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고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상해를 가함;

(x) 협약 8(2)(e)(v)에 의거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약탈,

(a) 2003년 8월 15일경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번디스 행정구 내 빈디시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주로 푸르 부족민의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가재도구의 약탈 등을 포함, 자행되었던 약탈 행위, (b) 2003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서 다르푸르 무크자르 지역 내 무크자르 마을과 그 인근 지역에서 주로 푸르 부족민의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상점과 주택 및 가축의 약탈을 포함, 자행되었던 약탈 행위, (c) 2003년 12월경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의 아라왈라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주로 푸르 부족민의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상점과 주택 및 가축의 약탈을 포함, 자행되었던 약탈 행위;

(xi) 협약 7(l)(e)에 의거, 반인륜범죄에 해당하는 투옥 또는 심각한 자유침해,

2003년 8월초경 서 다르푸르 무크자르 지역 내 무크자르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대부분 푸르 부족민이던 최소 400명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되었던 투옥 또는 심각한 신체적 자유침해;

(xii) 협약 7(l)(f)에 의거, 반인륜범죄에 해당하는 고문,

2003년 8월초경 서 다르푸르 무크자르 지역 내 무크자르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대부분 푸르 부족민이던 최소 60명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되었던 고문; 그리고

(xiii) 협약 8(2)(c)(ii)에 의거,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인간 존엄성 유린,

2003년 12월경 서 다르푸르 와디 살리 지역 아라왈라 마을과 그 인근지역에서 주로 푸르 부족 여인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인간 존엄성 훼손 행위.

협약 58(1)(b)(i)와 (ii)의 해석에 따라, 해당인이 조사활동을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해당인의 재판 출석을 확실히 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Mr 후세인의 체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함;

이와 같은 이유로,

다음을 발부함:

2005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후 검찰총장 측 청구가 제기된 당시까지 해당 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행위 당시 다르푸르 대통령 특별 대리 겸 수단공화국 내무부 장관 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북 카르툼의 카르마 시티 내 단크라 또는 그 인근지역 출신으로 추정되는 60세 이상의 수단 시민, 압델 라힘 무하마드 후세인에 대한 **체포 영장**.

영어와 불어로 작성됨, 영어판이 공식 문건임.

판사 산지 음마세노노 모나겐

부장판사

판사 실비아 스타이너

판사 쿠노 타르푸서

2012년 3월 1일 목요일

네덜란드, 헤이그